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2. 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2월 3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4. 회의경과

(15시 3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47호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승인안』, 제48호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 연장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안건요약 자료에는 ‘금지조치 기간이 종료되면 5.3일부터 별도 조치없이 자동 재개’라고 되어 있는데 안건에는 자동으로 재개된다는 표현이 없음. 안건 본안의 별지에도 명확하게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보고자)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함
- (위원) 재개시기 문제는 3월16일부터 재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한 것 같고 4월6일에 법이 시행되는 점에서 5월3일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위원) 공매도 부분 재개의 근거가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

허주하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에서 대주시스템이나 적발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증권사들도 필요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보고자) 참고로 제도개선은 4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개정은 4월6일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는 것은 한국거래소에서 2월에 별도로 공매도만을 담당하는 팀을 신설하여 담당할 예정임. 개인대주 부분이 5월3일에 재개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전에는 한 200억 원 정도 개인들한테 대주가 나가고 있었는데 2~3조 원까지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임.
- (위원) 자동적으로 재개가 된다는 표현들이 별지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정 문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 (보고자) 별지대로 승인을 하되 5월2일에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조치 없이 해제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결을 하면 될 것 같음.
- (위원) 안전 별지 금지기간 부분에 '금지기간 종료 이후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57분 폐회)